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03

발의연월일: 2022. 12. 23.

발 의 자:조명희·김미애·박대수

백종헌 · 서정숙 · 이종성

임병헌 · 최연숙 · 하영제

홍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애인활 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 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만 규정하고 점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결과를 공개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6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12.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	제한 등) ①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	
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	
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	
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	
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	
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	
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 ⑤ (생 략)
-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
 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
 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
 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
 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	
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u>기관·단체</u>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장	
애인활동지원기관	
<u>12.</u>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	
<u>종합지원센터</u>	
② ~ ⑤ (현행과 같음)	
6	
<u>이 경우 관계 중앙</u>	
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	
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⑦ ~ ⑫ (생 략) 제61조의2(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③ ~ ⑤ (생략)

- ⑦ ~ ①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음)

 ② ------
 - _____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보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 3.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